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안)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8일

파주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4. 2. ~ 2024. 9.
- 다. 지원인원 : 10명(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라.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파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 프랜차이즈, ② 주류판매 식·음료업, ③ 단란·유흥주점,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 비디오감상실
⑥ 안마시술소, ⑦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그 밖에 지원 제외업종은 [참고사항]에서 확인

바. 우대사항 :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사. 사업 참여 제외대상

-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⑥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8.(월) ~ 1. 25.(목)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이메일(marydog@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다.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심사)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등)
- (2차심사)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 서류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재산현황, 창업기간, 경력사항 등)
 - 면접심사 : 면접위원에 의한 심사(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라. 결과발표 : 2024. 2. 7.(수)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3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발 급 처
①	신청서	공통서류	공고문[서식1]
②	사업계획서	"	공고문[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문[서식3]
④	참여자 서약서	"	공고문[서식4]
⑤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⑥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신청인
⑦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2023년 ~ 2024년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⑧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홈택스, 정부24
⑨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신청인

4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6개월

나. 지원금액 : 임차료 50%(월 최대 50만원)*선정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다. 지원방법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사업결과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매출증빙서류 등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사업선정 취소

※ 각 첨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함.

나. 지원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요건
검증과정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와 협의하여 정함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

[서식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체크 하세요.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미기재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업종			사업자등록일
	임대료	원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명
	매출현황	원 (최근 3개월 평균)		
타 사업 참여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연/월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기재	
			(사업명)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업명) (지원내용)	
위와 같이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제출 서류 (필수)	1. 사업계획서 1부 3. 참여자 서약서 1부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배우자 포함) 각 1부 9.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6. 사업등록증 1부 8. 국세납세(완납)증명서 1부			
제출 서류 (우대 요건)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 대상자 등 ▪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기본정보

상 호 명	대 표 자		
창업분야 (업 종)	사업자등록일		
창업분야 경력사항 (근무경력, 교육이수 등)	근무처 / 교육기관	근무기간 / 교육기간	업무내용 / 교육내용
창업분야 자 격 증	자격증명	취 득 일	자격증 번호

*창업분야 경력사항(근무경력, 교육이수 등) 및 자격증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세부 사업계획

창업 동기	※ 창업을 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창업 관련 전문성	※ 창업 관련 전문성(전공, 경력, 입상실적, 대외활동 등)을 자유롭게 기술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

사업 경쟁력	<p>※ 사업의 창의성/ 독창성/ 기술성 등 사업의 경쟁력에 대해 기술</p>
시장분석 및 성장가능성	<p>※ 업계 시장규모, 수요처, 동종업계 현황 및 창업 초기 시장진입 가능성 및 지속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 등 기술</p>
홍보 및 판매 전략	<p>※ 사업의 홍보 전략 및 향후 판매(마케팅) 전략 등 기술</p>
향후 진화 계획	<p>※ 사업 지원 종료 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향후 중장기 계획 등 상세히 작성</p>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고용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동의일로부터 10년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 정보,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창업 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4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신청자 (법인 · 단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인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이행사항 위반 적발 시 지원 사업 중지와 지원금 환수조치 등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 임차료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
- 기타 위법사항 적발 등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파주시장 귀하

[참고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증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통주점업
	56212	무도유통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p>부동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종분류	표준산업 분류	업종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p>보건업</p> <p>*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p> <p>*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p>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p>증기탕 및 안마시술소</p> <p>* 시각장애인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